

춘천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186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2020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1868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일

담당변호사 허종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봉

변론종결 2022. 3. 16.

판결선고 2022. 4. 13.

주문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2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숯 구입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20. 12. 27. 피고에게 3,250만 원을 숯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관련 법리

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·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,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53733,53740 판결 참조).

3. 판단

갑 1, 6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숯(열탄) 등 건설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,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이 2020. 12. 27.경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숯 구입비용으로 3,2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계좌로 3,250만 원을 송금한 점,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숯 구입 거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원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고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점, ③ C은 C과 피고 사이에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이를 상계 내지 정산하면 피고는 C에게 201,310,120원을

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. 11. 24.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은 인정된다.

그러나 한편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㉠ 피고는 2020. 12. 21.경 C에게 C의 냉동개구리 수입사업 자금으로 6,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판매수익금을 합한 6,600만 원을 2020. 12. 26.까지 3,300만 원, 같은 달 30. 나머지 3,30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2. C에게 6,000만 원을 대여한 점, ㉡ C은 2020. 12. 27. 위 대여금의 일부 상환으로서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3,250만 원 송금되도록 한 점이 인정되는바,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금원은 C의 피고에 대한 냉동개구리 수입사업 대여금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편취금이 C의 점유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바로 송금되었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, 위 법리는 공평·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킬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이득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것일 뿐 편취한 금전이 피해자로부터 이득자에게 직접 교부된 것인지 채무자의 점유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편취사실에 대한 이득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소로 될 수 있을 뿐이다. 나아가 송금명의인이 채무자 아닌 피해자인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금원 취득에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)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수영